

## I. 개요

1. 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07:15~09:15

2. 장소 : 서울 팰리스호텔 다봉

3. 참석자

▣ 발표자 :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통상과장)

▣ 참석자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송주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형성, 농협중앙회 해외협력팀장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팀장  
박종한,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1등 서기관  
최세나, 지식경제부 사무관  
황석채,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사무관

4. 제목

DDA 농업협상 동향: 세부원칙 수정안을 중심으로

## II. 주요 논의 사항

### 1. 발제내용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동향

#### 가. 시장접근분야

##### ① 관세감축

- 의장은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구간별 감축률로 제시된 최소 최대 수치 가운데 중간 수치를 제시
- 선진국 최소 평균감축률 이행의무는 유지하였으나 감축률 계산시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도 포함토록 하여 부담을 다소 완화
- 개도국 최대 평균감축률 규정을 유지하였으나 감축률 계산시 민감품목 감축률을 포함토록 함에 따라 일부 혜택 감소

##### ② 민감품목

- TRQ 증량을 위한 민감품목의 소비량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품목단위 접근법, 세 번단위 접근법(partial designation))을 보다 구체적으로 첨부
- 개도국에게 민감품목의 TRQ 증량의 융통성을 제시
  - (1안)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
  - (2안) 일반 감축률의 3/4를 적용하되 TRQ 증량 없이 이행기간 2년 단축(단, 민감품목 수의 2/3에 한해서 적용 가능)

##### ③ 관세상한

- 개도국은 150% 초과 세번수가 5.3%를 초과할 경우 [0.33]% 추가 증량하는 우대 내용이 추가됨

## ④ 특별품목

- 개도국은 세번의 [최대 20% 최소] 8%를 특별품목으로 지정가능
- 최소 세번 개념 도입시 8% 이하 세번에 대해서는 지표\* 적용 면제
- 민감품목 TRQ 증량외의 옵션을 이용하지 않은 국가에 한해 非사용 민감품목의 SP전환 인정(단, 민감품목 개수의 1/3을 한도로 하고 감축률은 20%를 적용)
- 관세감축은 2개 범주로 나누어 1그룹(SP의 [40][no]%)은 관세 감축을 면제하고 2그룹(나머지 SP)은 평균 15%(최소12%, 최대 20%)의 감축률을 적용

구분	SP 품목중	대우(감축율)
1	[40][no] %	[0]%
2	[60] %	평균 15%, 최소 12%, 최대 20%

## ⑤ SSM

- SSM의 쟁점인 발동기준과 구체조치는 G-33 제안과 수출국제안을 나누어 기술하여 양자 택일하는 구조로 단순화
- 12개월간 발동대상 품목 수 및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은 SSM의 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평가됨
- 구체조치 후의 관세수준이 UR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 국내보조분야는 발표자료 참조

## 나. 최근 동향

-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월 19일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며 5.26일 주간부터 제네바 차원의 다자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의장은 기존의 주요국 심층회의(Room D, 37개국 참여) 대신 **핵심이슈**에 대해서 10여국 내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소규모 고위급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위한 **타협안 모색** 중
  -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특별품목 및 개도국긴급수입제한조치(SSM)** 소규모 고위급회의에 초청되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
  - 일률적 관세상한 도입되지 않도록 하되, 의장문안 75항 방식을 적극 검토하면서 개도국 우대 등을 통한 실리확보 노력
  -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은 G33과 공조하여 감축면제 등 최선의 대우를 가능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
  
-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 관련, **품목범위 리스트** 관련 논의와 Data 6 그룹이 제출한 **소비량 데이터 검증작업** 진행중
  - 원칙적으로 품목범위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세부원칙에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를 첨부해야 함
    - \* 현재 Data 6 그룹중 미국, EU, 일본, 노웨이, 스위스 등 5개국이 제출
  
-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중 농업/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 개최 가능성** 있음
  - 각료회의에서 농업/NAMA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 대선 등 주요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연내종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은 선·개도국 관세감축수준과 개도국 우대조치 등 주요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태이며 미국 주도의 주요국 비공식협에서 타협안을 시도하고 있음

## 2. 토론 내용

- 전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이 늘어나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만 국내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이 보다 어려워졌다고 판단됨
- 민감품목의 선정도 이전에는 해당 품목의 시장개방 폭을 비교하여 즉, 관세감축 및 TRQ물량 증량간의 trade-off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TRQ를 증량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지정이 국내 품목단체의 정치적 입김을 많이 받을 것임.
  - 관세가 낮은 품목의 민감품목 지정은 TRQ 증량의 단점 때문에 배제의 합리성이 있었으나, 민감품목의 TRQ 무증량 및 이행기간 연장의 옵션이 있어 민감품목 지정 요구가 그 만큼 커질 것임.
  - 예를 들어 한 품목에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차이가 가능(단 최상위 구간 품목으로 가정)

		관세감축률 (%)	TRQ 증량 (국내소비량의 %)	이행기간 (년)	비고	
개도국	① 일반 품목	44~49	-	8	2/3 이탈	
	② 민감 품목	15~16	2.0~3.0			1/2 이탈
		22~24	2.3~3.7			
		29~32	2.7~4.0	11	TRQ 융통성	
	44~49	-	6			
	33~37	-				
	③ 특별 품목	20	-	8	민감→특별	
		-	-		면제 가능성	
		15	-		평균	
		12	-		최소	
20		-	최대			
선진국	㉠ 일반 품목	66~73	-	5		
	㉡ 민감 품목	22~24	3.0~5.0			
		33~37	3.5~5.5			
		44~49	4.0~6.0			

## □ 특별품목

- 특별품목의 선정은 지표에 따라야 하지만 주 16에 따라 세번의 8%만큼은 지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품목의 선정에 그 만큼 용이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수 있음.
- 즉, 지표에 따라 엄격하되 선정된다면 오히려 감축의무 면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쌀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별품목이 지표에 의거 엄격하게 선정되어 감축의무 면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설령 특별품목으로 세번의 8%만 설정된다고 해도 감축의무 이행에서의 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에 의해 선정된 세번과 그렇지 않은 세번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물론 특별품목의 수가 8% 이상으로 합의된다면 8%를 추가하는 세번은 자동적으로 지표에 따라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의 논리에 따라 의무이행에 있어서도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 전반적인 사항

- 이번 수정안은 보조금 감축률,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 특별품목 개수 등 '08.2월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등 일부 기술적 사항의 진전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잔여쟁점수가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함. 즉 쟁점이 담긴 [ ] 숫자는 지난 2월 의장수정안에서는 170여개 였으나 이번에는 30여개로 줄었음.
- 한편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직접적인 관세상한 배제, 민감품목의 세번별 지정방식(partial designation),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면제 인정, AMS의 블루박스 전환시 신축성 등은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상한 대안 및 민감품목 등에 있어 개도국 우대규정(S&D) 도입을 명확히 한 점 등은 2월 수정안보다 개선되어 긍정적이며 동 규정 활용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여전히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